

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9.

발의자 : 최도자 · 김광수 · 정인화  
전혜숙 · 윤영일 · 강창일  
주승용 · 박명재 · 김중로  
이용주 · 김해영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8조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별 칙) ① 제23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·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	제48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5천만원----- -----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 -----.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